
2026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계획



2026.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목 차

I . 근거 및 목적-----	3
II . 추진 경과-----	3
III . 2025년 추진 성과 및 2026년 추진 전략-----	4
IV . 정책 개요 및 추진 방향-----	5
1. 정책 개요-----	5
2. 추진 방향-----	6
V . 세부 추진 계획-----	7
1. 경기형 지원체계 운영-----	7
2. 절차별 운영 내용-----	8
3. 정책추진 기반 마련-----	14
VI . 향후 일정 -----	16
VII . 기대 효과 -----	16

[참고]

1. 주요 관찰 항목 예시
2. 연계 지원 시 기본 원칙 및 지역기관 유형별 기능
3. 경기도청 긴급복지 핫라인 적극 연계·활용

[서식]

1.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뢰서(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 동의서(안)

[Q&A]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Q&A

2026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계획

I 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¹⁾ 시행(2026. 3. 1.)
- 「2026 경기교육주요업무계획」 2-2-3-1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1297(2026.2.9)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운영계획」

□ 추진 목적

- 학생 중심 맞춤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 인재 양성
-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

II 추진 경과

- (2022. 5.)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확정
- (2022. 12. 28.)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
- (2023. 1. 3.)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안내
- (2023. 9. 25.) 전문인력 배치(일반임기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명)
- (2025. 1. 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 (2023~2025년) 선도학교 운영(용인신봉초, 고림중, 총 2교)
- (2023~2025년) 학교 관리자(교감, 교장, 행정실장) 역량 강화 연수 및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상담, 복지, 건강, 진로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2025. 1. 21. 제정됨

지역 유관 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찾아가는 연수 실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교육지원청-지역 유관 기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체계 안착 지원 필요

III 2025년 추진 성과 및 2026년 추진 전략

1. 2025년 추진 성과

○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현황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가동

구분	신청경로	학교	학생	지원액(천원)	지원 영역	기관 연계
교육지원청	학교·기관	12교	19명	10,000	학습, 복지, 관계 증진	26회
지역기관연계	학교·기관	132교	300명	64,970	희망장학금, 의료비, 냉방비 등	10회
공동사업	학교	7교	642명	10,323	관계 향상,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	-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내·외부 역량 강화

-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역량 강화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유관 업무 담당자 통합 워크숍과 교육지원청 전직원 연수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 지역네트워크구축및운영사례를다수의언론에보도하여긍정적인식확산

2. 2026년 추진 전략

○ 학교 내·외부 협력 체계 고도화로 교사 업무 부담 경감

- 담임교사가위기학생지도를혼자감당하지않고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내부 소통과 협의 구조를 안착
- 학교관리자가인근유관기관장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여 지역 유관 기관 소통 활성화 및 협력 체계 조성

○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실무 지원 및 문제 해결

- 「학생맞춤온콜」을 통해 학생지원 관련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필요시 「학교현장지원단」을 통해 전문적 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선도학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부 협의 모델로 확산하여 동료 교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긍정적 문제 해결 문화를 조성

○ 권역별 소통망 확충 및 홍보·연수 강화하여 용인형 모델 안착

- 지구 장학 협의를 적극 활용하여 단위 학교급 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운영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관리자 통합 연수를 활용하여 내부 협의 절차 안내

IV 정책 개요 및 추진 방향

1. 정책 개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법 제2조)

□ 지원 대상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학생

□ 지원 영역

영역	내용
학습·진로 지원	•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진로교육, 이주배경학생 학습지원 등
심리·정서 지원	• 위(Wee)프로젝트 등을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건강·안전 지원	•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복지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보장 등

※ 영역별 기존 학생지원 관련 역할(업무)이 지역지원센터로 통합되는 것이 아님

□ 지원 방식

- 학생을 중심에 두고 지원 영역별 사업 간,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2. 추진 방향

☐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고 ☐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학교·교원 업무 부담 최소화

○ 전담기구 설치 불요

- 학교 내 기존 협의체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학교별 여건이 달라 별도 위원회 등 전담기구 신설 불요 ☞ 기존 학교 내 협의체 활용

○ 관리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 대상 학생 선정·지원에 대해 교장이 총괄하고, 기존 학교 내 교육활동·프로그램 연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교감이 조정·조율

☐ 학생·학교 지원체계 강화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²⁾ 설치

- 센터 설치를 통한 학교 내 지원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학생의 통합적 지원

○ 「학교현장지원단」³⁾ 운영

- 학교 현장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수행 협력·지원

2) 본청에 시·도학생맞춤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 설치,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 설치(법 제8조)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경험자(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풀(※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기존 학교 지원체계 활용 가능)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보강

- 지역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

○ 교육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역량 강화 및 정책 지속성 확보

- 센터 담당자 및 학교현장지원단 대상 전문성 향상 연수
- 매뉴얼 보급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V 세부 추진 계획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⁴⁾ 체계 운영

-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운영체계 설계 ☞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 지원

❖ 학생맞춤온콜 운영 (의뢰 절차 간소화 및 의뢰·지원 관련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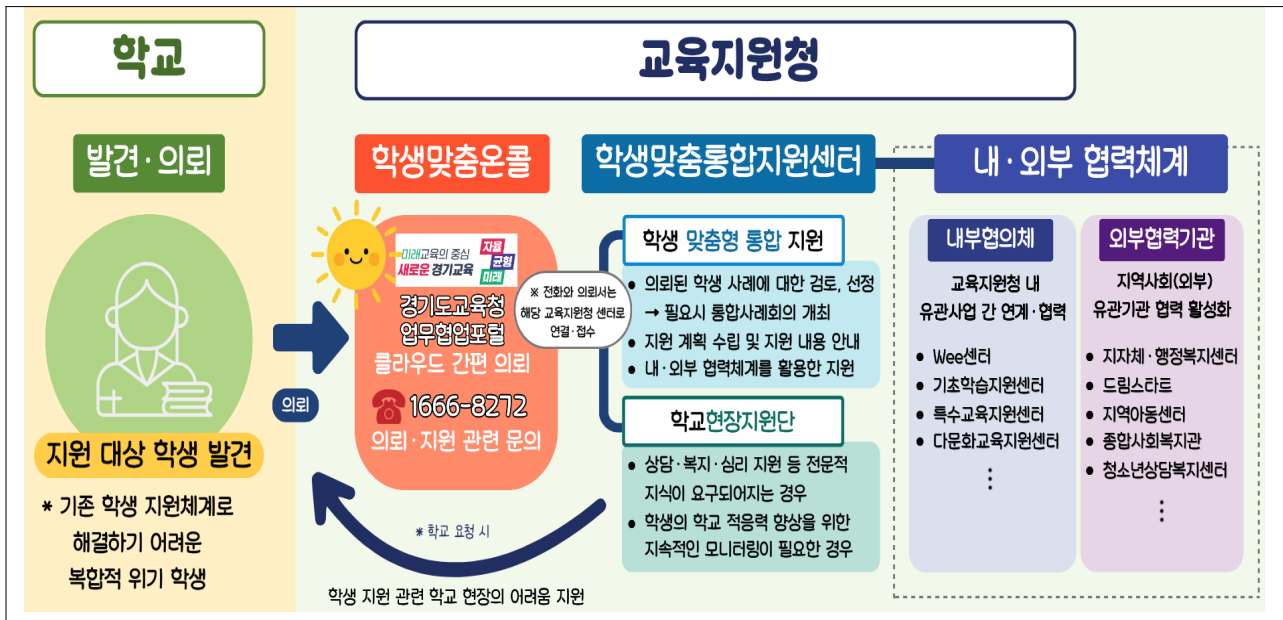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복합적 위기 학생의 전문적 지원)

❖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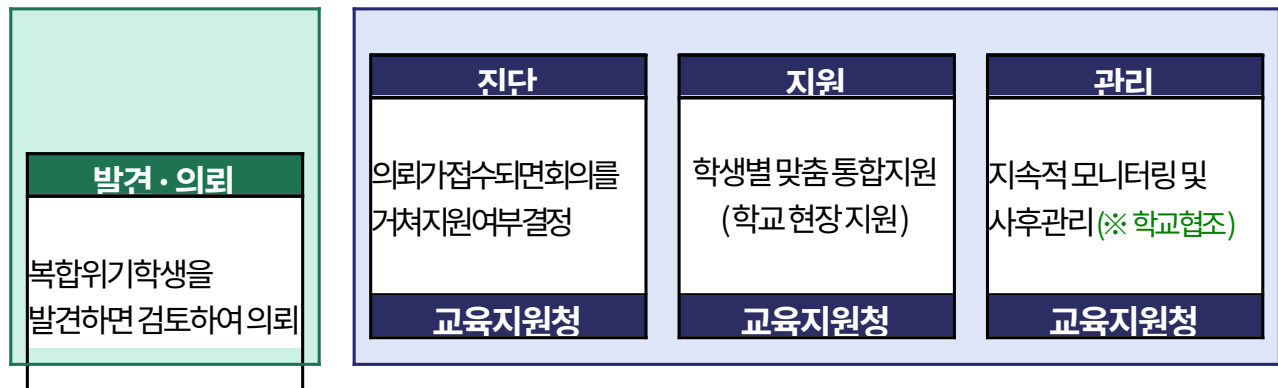
5)

4) 경기도 내 시범교육지원청의 운영 방식 중 학교 현장 지원 모델을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만의 지원체계 마련

5) ‘온’은 ‘따뜻할 온(溫)’과 ‘켜져 있음을 뜻하는 온(ON)’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콜’은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따뜻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상담·의뢰시스템



□ 운영 절차



2. 절차별 운영 내용

발견·의뢰

[학교]

[기존]	[변화]
담임교사(또는 사업담당교사)의 개별적 지원 학생 발굴	학교 모든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복합지원 필요 학생 조기 발견

□ 발견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적 관찰과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이 의심되는 경우 등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발견

- [참고 1] 주요 관찰 항목 예시

□ 의뢰

○ 대상 및 방법

- [의뢰 대상] 기존 학교 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 [의뢰 방법] 업무협업포털로 의뢰서 제출

학생맞춤 온콜	업무협업포털 (클라우드)	(의뢰) - 의뢰서제출(업무포털>업무협업포털>Drive>의뢰서파일제출) ※ 의뢰서, 동의서별첨서식참조 ※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교직원이 작성, 의뢰서 작성자가 스캔파일을 업무협업포털(업무협업G-ONE)로 제출-불임참고
	대표전화 (1666-8272)	(상담) - 통합지원 관련 문의 및 의뢰 전 협의 - 학교내검토(협의) 과정에서 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요청 등

○ 의뢰 과정 (학교→교육지원청)



❖ 관리자 중심의 지원체계

- 교장(총괄):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교감(조정): 지원 영역(사업,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조정 및 의뢰 여부 검토

- [발견]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 [검토] 교감이 교육지원청 의뢰 여부 검토

1안 [약식협의] 교감(또는 교장), 발견 교직원, 필요시 해당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교직원과 협의하여 의뢰 여부 검토

※ 사안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이 참여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2안 [기존 위원회(협의체) 활용] 기존 학교 내 위원회(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뢰 여부 검토

- 6) **학생맞춤온콜 대표전화**는 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콜센터가 아닌, 위치기반 전화연결 서비스로 해당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용인교육지원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가 연결됨 (2026. 3. 1. 개통 예정)

3안 [교육지원청 협의 요청] 긴급한 사안 또는 지원영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협의 참여 요청

- **[의뢰 결정]** 교장은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지원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으로 의뢰

※ 의뢰서는 [서식 1]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학교장 결재(서명) 후 의뢰

※ 검토 결과 이미 학교 내 구축된 지원체계(학업중단예방, 위프로젝트 등)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 자체 지원으로 진행

※ 기존 연계·협력 중인 외부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 학교 자체 연계 지원 가능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절차 이행에 대한 업무 부담 완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제3항,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안)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지원하는 절차(학교 내 협의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교장 또는 교감이 참여하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 내 협의 구조라도 그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위 법령에 따른 선정·지원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검토 결과 학교 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동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의뢰 시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동의

※ [서식 2] 학생맞춤통합지원 동의서(안) 참고

관련 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준비

○ 「용인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내부협의체’ 구성(2026. 2월 중)

- [센터] 교육지원청은 [별첨]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준비

구분	설치과	인원	센터구성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생활교육과	4명	· 센터장: 과장(1명) · 팀장: 장학사(1명) · 팀원: 주무관(2명)

- [내부협의체] 교육지원청 내 유관사업간 연계·협력을 위한 내부협의체⁷⁾ 구성

순	영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부서명	담당(팀/센터)	직
1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학교행정지원과	통학지원팀	팀장
2	상담 지원	생활교육과	Wee센터	실장
3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초등미래교육과정팀 중등진학팀	장학사 장학사
4	다문화학생등에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지역교육과	공유학교운영팀	장학사
5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6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주무관
7	진로상담 관련 지원	지역교육과	공유학교운영팀	장학사
8	학생의보건·안전관리 관련 지원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팀장
9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주무관

7) 교육지원청 내 개별 지원 사업 또는 센터(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기초학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협의체

10	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연계된지원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장학사
----	-----------------	-------	----------	-----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후임 담당자로 지정

○ 「용인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2026. 상반기)

- [위원회] 시행령(안) 제5조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 준비, 시행령 제정 지연에 따라 2026년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4호의 심의 생략
(단, 제2호의 추진실적 분석·평가는 시행령 제정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 일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심의)

관련 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접수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용인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으로 요청한 의뢰서 접수
- [접수] 학교 내 지원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뢰 건에 대한 접수

□ 학교 방문(필요시)

- 학교 내 자체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 내 지원체계와 함께 협의하여 학생지원 절차를 도움

□ 통합사례회의

- 접수된 사례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 [회의 개최] 학교에서 의뢰된 사례를 접수하여 통합사례회의 개최

1안 [자체 회의] 지역지원센터 담당자와 팀장이 자체 회의를 거쳐 결정

2안 [내부협의체 및 외부협력기관 참여] 내부협의체의 의뢰 학생의 지원 관련 담당자와 외부협력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회의를 거쳐 결정

※ 내부협의체 및 외부협력기관의 참여 여부 및 참여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

- [추가 조사] 의뢰서 외 복합적 위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학생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추가조사가능 항목

- 학생의 학업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의 건강·심리상태 등에 관한 사항
- 학생의 경제상황 및 가정환경 등에 관한 사항

-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성, 복합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원대상학생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 안내

○ 통합사례회의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뢰학교에 안내

- [안내 방법]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

※ 학생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하여 안내

지원	[교육지원청]	(학생지원): 내부-외부	(학교지원)
----	---------	---------------	--------

[기존]	[변화]
각 사업의 개별 지원으로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발생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시 활용 곤란	사업간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지원 센터-지역사회간 협의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학생지원 활성화

□ 학생지원

○ 내부협의체와 외부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

- [내부] 교육지원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 [외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지자체,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학교지원

- 「학교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수행을 협력·지원
- 「학교현장지원단」 역할은 학교 현장 지원(학교에서 발견·의뢰 시 발생하는 어려움 지원) 및 컨설팅(통합지원 관련 및 복합위기학생 개입 등), 교직원·보호자 대상 연수 및 자문 등 실시
- 「학교현장지원단」 구성 (안)

연번	구분	소속	직	성명	업무 및 역할
1	내부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학생생활지원
2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기초학력
3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다문화
4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특수교육
5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학교폭력
6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아동학대
7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위기관리
8		교육지원청	변호사	000	법률자문
9		교육지원청	실장	000	상담(Wee센터)
10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초등(해당교) 담임장학
11		교육지원청	장학사	000	중등(해당교) 담임장학
12		선도학교	교감	000	학생맞춤통합지원
13		초등학교	교감	000	학생맞춤통합지원
14		중·고등학교	교감	000	학생맞춤통합지원
15	외부	용인시청(복지정책과)	팀장	000	긴급복지지원
16		용인시청(아동보육과)	팀장	000	드림스타트
17		용인 기흥구	주무관	000	무한돌봄네트워크팀
18		용인 수지구	주무관	000	무한돌봄네트워크팀
19		용인 처인구	주무관	000	무한돌봄네트워크팀
20		용인동부경찰서	팀장	000	청소년 보호
21		용인서부경찰서	팀장	000	학교 전담
22		용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000	영역별 사례관리
23		용인시가족(다문화)센터	팀장	000	영역별 사례관리
24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과장	000	영역별 사례관리
25		용인세브란스병원	팀장	000	의료사회사업

※ 학교 현장에서 의뢰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지원단은 추가 구성 예정

□ 모니터링

○ 학생 지원사항 및 학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지원사항 확인]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업별 지원 결과 및 외부 연계 기관의 지원내용, 지원 결과, 특이사항 등을 확인
- [변화 확인] 학생 변화(출결·관계·정서 등)를 확인

□ 사후관리

○ 지원 종료 여부 결정 및 추가·지속지원 필요 여부 검토, 종결 후 일정 기간 학교 중심 모니터링

- [종결] 모니터링 결과 교내 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여 **학생이 학습참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결**
- [추가지원] 모니터링 결과 기존 지원 외 추가적인 문제 발견 시 통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관리] 종결 이후에도 학교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센터는 **통합지원 종결에 따른 지원 현황 관리**(필요시 학교, 외부연계기관과 내용 공유 ※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3.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용인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 센터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센터 구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추진 기반 마련 및 학교 지원 강화

□ 지역 내 유관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협약으로 지역별 연계 자원 불균형 해소

- (교육청-지자체) 위기학생 조기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 (교육청-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연계 취약 지역 현장 중심 공동 사례관리

□ **통합지원 전문성 강화**

- 학교현장지원단 대상 역량 강화 연수, 학생맞춤통합지원 메뉴얼 보급 등을 통해 **통합지원 전문성 강화**
- 관리자 연수, 찾아가는 컨설팅,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통합지원 역량 강화**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협력 기관 발굴을 통해 **지속적 학교 현장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수 확대

□ **학교 관리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연수 실시**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학교 역할 및 의뢰 절차,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상반기, 하반기)

□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총액교부**

- **지원금액: 1교당 100만원**
- **지원내용:** 단위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운영에소요되는경비(교육운영비)로 집행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연계·협력)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학교(포곡중) 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및 시행
- 교육복지안전망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영역 중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 내용 등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매뉴얼」에 따라 추진

□ **「온용 울타리」 학생맞춤 지원(2026. 4.~ 12.)**

- 대상: (초·중·고) 학교 중 신청교 20교(1교당 1,000천원) 선정 예정
- 내용: 사제동행 멘토링과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 지원

※ 2026년 3월 중 별도 신청 안내 예정

※ 202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희망교실 미운영하니 사제동행
멘토링에 관심 있는 교직원은 「온용 울타리」 신청 바람

VI 향후 일정

순	일정	주요 일정
1	2026. 2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 계획 수립 학생맞춤온콜과 업무협업포털 운영 시범 운영
2	2026.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 계획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전면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학생맞춤온콜과 업무협업포털 전면 운영
3	2026. 상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학교현장지원단 구성 및 역량 강화 연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학교 관리자, 내부 담당자 및 외부 협력 기관 담당자 연수 단위학교 지원(긴급사안, 자원영역에 대한 자문, 지역기관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역기관 협력 체계 구축(홍보 및 협의회)
4	2026. 하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학교현장지원단(실무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연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 담당자 및 외부 협력 기관 담당자 연수 단위학교 지원(긴급사안, 자원영역에 대한 자문, 지역기관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역기관 협력 체계 구축(홍보 및 협의회)
5	2026.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성과 평가 성과 평가를 통한 차년도 개선 방안 마련

VII 기대 효과

센터 구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추진 기반 마련 및 학교 지원 강화
‘학생맞춤온콜’ 운영으로 학교 업무 부담 간소화 및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
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운영을 통한 인식 제고
지구장학협의회 논의 주제 제안 및 학교별 운영 사례 공유 활성화

참고 1

주요 관찰 항목 예시

주체	장소	관찰 내용
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실	• 잦은 지각, 조퇴, 결석 등 학교 출결 문제가 있는가? • 교실 내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가? • 학습, 신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가? • 수업 참여 태도(산만함, 과제수행, 교실이탈 등)에 문제가 있는가?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진 않은가? •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교실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않는가?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교	• 학교생활 중 표정이 밝은가, 어두운가? •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바뀌었는가?
보건교사	보건실	•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 •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는가? •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거짓증상을 호소하지는 않는가?
영양교사, 영양사	급식실 (식생활 교육관)	• 급식을 잘 먹지 않는가? • 식사지도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가? • 영양상담 과정에서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가? • 식사시간 중 또래들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학생이 있는가?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위(Wee) 클래스	•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학생의 최근 주요상태(사고, 정서, 행동) •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행동(대인관계 등)이 있는가? • 또래상담반 등 이전 상담경험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가?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상담실	• 진로수업시간에 나타난 언어와 행동에서의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가? • 진로상담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가?
교육복지사등	교육복지실	•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시 발견된 특별한 행동은 없는가? • 가정방문 시 위생 상태 청결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한가? • 교육복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 외 교직원	학교 내	• 그 밖에 개별 교직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2

외부협력기관 연계지원 시 기본 원칙 및 지역기관 유형별 기능

□ 연계 지원 시 기본 원칙

구분	내용
학생 중심의 판단	학생의 안전과 회복, 성장을 모든 의사 결정 중심에 두고, 기관의 관점보다 학생의 필요를 우선으로 고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의 구조화	학교·교육지원청·지역기관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과정에서 혼선·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 구조화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 유지	단발성 개입이 아닌 지원→점검→조정→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유지하여 학생의 변화와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구조 마련
최소·필요 범위 정보 공유	학생·가정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
전문성 존중과 협력 기반 원칙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적 개입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 지원
존중·소통 기반의 협력 관계 유지	기관 간 관점 차이나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조정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

□ 지역기관 유형별 기능

기관명	주요기능	연계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위기 개입	고위험군 조기 발견·전문성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조사·보호	은폐된 학대 파악·법적 보호
희망복지지원단	통합복지·긴급지원	복지자원 폭넓은 연계
가족센터	가족상담·부모교육	가족 기능 개선 및 부모 갈등 조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안전망 제공
경찰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즉각적 위험 해소
사회복지관	생활환경·돌봄·복지	생활환경 개선·돌봄 제공
의료기관	진단·치료	의료적 근거 제공
청소년쉼터	단기 보호·위기청소년 안전 확보	즉각 안전 보장
자활·고용기관	보호자 경제자립 지원	가정 기반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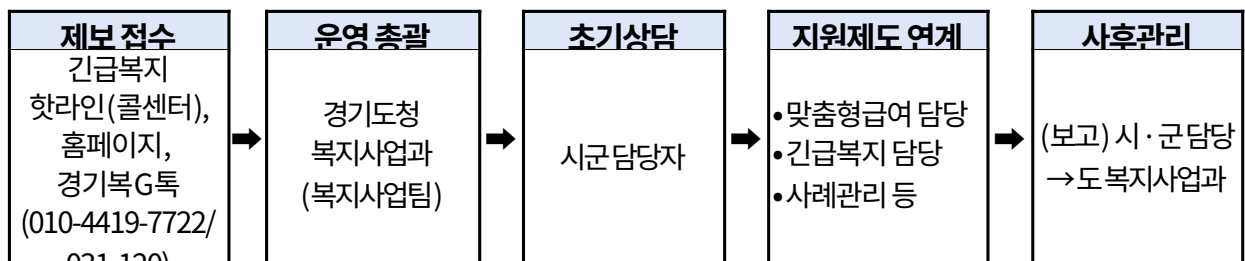
□ 대상

- **어려운 이웃**: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고시원·쪽방촌 등 주거 취약가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대한 질병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가족돌봄청(소)년**: 질병(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 포함
 - 2인 이상의 성인이 돌봄 할 경우 제외
 - 돌봄대상이 자녀인 경우 제외(한부모 지원체계 내 지원)

□ 문의처: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031-8008-5671)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통화(문자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031-120-0)**: 120 콜센터 상담 후 전문상담원 연결
- **경기복G톡**: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로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상담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welfarehotline>):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코너 이용

□ 지원 절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위와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부거복지상담센터,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뢰서

학교명			작성자			연락처		
대상 학생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보호자		
						학생		
	가족현황	☐ 부모 ☐ 한부모(부/모) ☐ 조부모(조부/조모) ☐ 소년소녀가장 ☐ 친척 ☐ 시설 또는 쉼터 ☐ 기타()						
경제여건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가정 ☐ 법정한부모가정 ☐ 교육비지원대상자(중위소득 %) ☐ 기타()							
학생 어려움 (중복 체크 가능)	학업	☐ 학업중단위기 ☐ 기초학습부진 ☐ 기타()						
	심리·정서	☐ 우울·불안 ☐ ADHD ☐ 분노·폭력 ☐ 기타()						
	건강·안전	☐ 학대(방임) ☐ 자해·자살시도 ☐ 학교폭력 ☐ 기타()						
	경제·생활	☐ 경제적 어려움 ☐ 기타()						
	기타사항							
학생 에게 필요한 지원 영역 (중복 체크 가능)	학업	☐ 학업중단 관련 ☐ 기초학습부진 관련 ☐ 기타()						
	심리·정서	☐ 심리상담·치료 관련 ☐ 기타()						
	건강·안전	☐ 아동학대관련 ☐ 학생건강관련 ☐ 학교폭력관련 ☐ 기타()						
	경제·생활	☐ 교육비·교육급여 ☐ 생필품 등 지원 ☐ 기타()						
	기타사항							
의뢰 전 지원내용 (중복 체크 가능)		☐ 없음 ☐ 있음(☐ 학업 ☐ 심리·정서 ☐ 건강·안전 ☐ 경제·생활 ☐ 기타) (체크된 항목에 대한 내용 작성:)						
동의 여부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여부 ☐ 동의(동의자 성명(관계):)						
신청사유 및 학교의견								
위와 같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성명) ○○○○ (서명)								

※ 대상 학생의 가족 현황 및 경제 여건은 확인 가능한 부분만 작성함, 교육지원청에서 (서식2) 동의서를

근거로 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 요청하여 확인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뢰서 작성방법

1. 대상학생 정보

- 학생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명 및 관계, 연락처(보호자, 학생 구분) 작성

- 가족현황

- 부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
- 한부모(부/모):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부모(조부/조모):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친척: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
- 시설거주: 시설 또는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
- 기타: 상기 나열된 이외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형태 기입

- 경제여건

※ 「업무포털-나이스-교육복지-수급자관리-교육복지수급자관리」 에서 학생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의 혜택을 받는 가구
- 법정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가구
- 법정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모자또는 부자가구
- 교육비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정에는 제외되었지만 교육비(체험학습비, 방과후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를 지원받는 가구로 확인되는 중위소득기준 기입
- 기타: 위 유형에는 없으나 긴급위기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 경우 기입

2. 학생 어려움: 학생을 관찰하며 확인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체크(중복 체크 가능)

3.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영역: 학생이 가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 체크(중복 체크 가능)

- 제시된 항목 이외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기타에 기입

4. 의뢰 전 지원내용: 개별 서비스 지원 경험 없음/있음 체크

⇒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을 체크하고 지원내용 기재

- 학업: 기초학습 부진 등의 사유로 학습 관련 지원(예시)
- 심리·정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예시)
- 건강·안전: 자살·자해로 인한 의료비, 심리치료비 지원(예시)
- 경제·생활: 학교 자체, 교육복지안전망 등을 통한 지원(예시)
- 기타: 제시된 항목 이외의 지원

5. 신청사유 및 학교의견

○ 학교 의견은 의뢰 전 학생의 어려움과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작성

예시) 한부모가정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기에 조지 안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새피프 이보 드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학년/반, 성별, 주소, 보호자·학생연락처, 경제여건, 가족현황, 학교생활, 공공·민간기관 지원 서비스 현황 등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족)의 경제·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신체 건강, 정신건강 정보가 포함된 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 기간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연계기관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학년/반, 성별, 주소, 보호자·학생연락처, 경제여건, 가족현황, 학교생활, 공공·민간기관 지원 서비스 현황 등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족)의 경제·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 신체 건강, 정신건강 정보가 포함된 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이용 동의

※ 학생맞춤통합지원 이용: 초기면담 및 상담, 가정방문,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공공·민간관계기관 담당자가 가정방문 혹은 유선연락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학생맞춤통합지원관련 Q&A

【정책 개요】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무엇인가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학업중단,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학생 지원 사업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어 학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발견·협의하여 지원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는 교육지원청에 의뢰하여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어 교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닌가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학생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는

체계의 변화입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 교사 1인이 담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협의하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한 것으로 복합적 위기 학생의 지원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관리자 중심 지원체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할 때 학교 관리자의 관심·관여가 부족하거나 일부 교원·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 사업 간 조정·조율이 어려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가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

- “학교장의 관심이 중요해요, 부장, 간사가 조정·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5.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학생 지원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관련 공문 접수와 예산 집행 등 최소한의 업무처리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해당 업무처리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모든 교직원이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을 위한 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절차는 관리자와 발견 교직원, 지원 관련 교직원 등의 약식협의 또는 기존 위원회(또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자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무처리자가 모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회의를 주관하거나 의뢰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 내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별 담당자가 기존대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발견·의뢰】

6. 지원대상학생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견하면, 발견한 교직원이 관련 내용을 교감에게 보고하고, 교감은 사안에 따라 관련 교직원과의 약식협의를 하거나, 기존 학교 내 위원회(또는 협의체)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별 여건과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함께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음

7.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견한 교직원은 관련 내용을 교감에게 보고하고, 교감은 사안에 따라 관련 교직원 간의 약식협의를 통해 의뢰 여부를 검토하거나, 기존 학교 내 위원회(또는 협의체)를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학교 내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1666-8272를 통해 상담을 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검토 결과 학교 내 기존 지원체제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 별도 의뢰 없이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교 내 기존 지원체제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지원청(센터)으로 의뢰합니다.**

8. 의뢰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 의뢰서에는 해당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보(가족현황, 경제여건, 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내용 등)를 작성해야 하며, 의뢰 후 필요시

교육지원청(센터)의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가 학생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교직원**이 작성해야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의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학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 의뢰서에 서명하면, **의뢰서 작성자가 스캔 파일을 업무협업포털(업무협업G-ONE)로 제출**하면 됩니다.

◦ **경로: 업무포털 > 업무협업G-ONE >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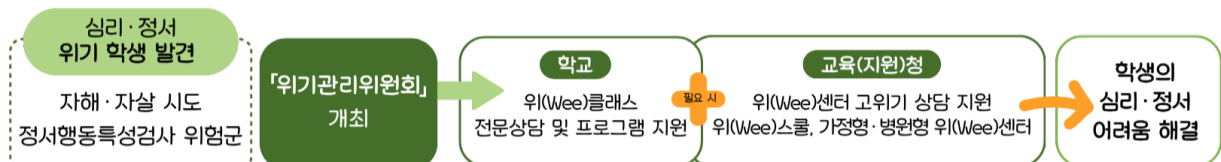
◦ **방법**

- ① My files에 의뢰서 저장
- ② 해당 파일 클릭 후 공유 선택
- ③ 관할 교육지원청 센터 검색 후 담당자에게 해당 파일 공유(의뢰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안내 공문이 오면 해당 파일 삭제 처리 ※파일 유출 등 관리를 위한 삭제, 원본 의뢰서는 별도 서면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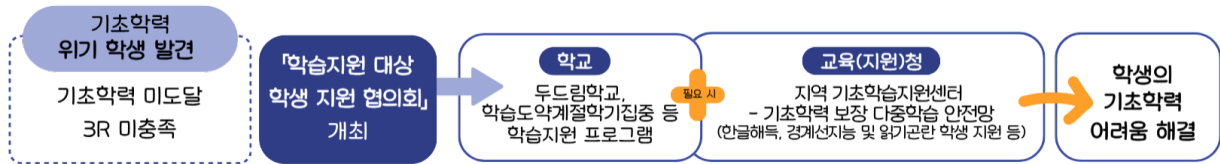
10. 기존 학교 내 지원체계란 무엇인가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존부터 학생에게 지원해 오던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 예시1)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Wee)클래스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위(Wee)센터 등에 연계하여 지원



- 예시2)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두드림학교, 학습도약계절학기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기초학습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



- 예시3)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학생을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 기존 학교 내 지원체계가 있더라도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거나 장기간 학교 내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11. 학생맞춤온콜 1666-8272는 언제 전화를 할 수 있나요?

- 학생의 안전이나 상황 판단이 시급하여 의뢰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상태 변화가 급격하거나 즉각적인 지원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의뢰서 작성에 앞서 온콜 전화(1666-8272)를 통해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아동학대 등 법정 신고사항은 해당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

-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 또는 의뢰 관련 문의 시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표전화(1666-8272)는 정책 초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학교 지원을 강화(현장지원단 요청 등)하기 위해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대표전화로 개설한 것으로 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콜센터가 아닌 위치기반 전화연결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센터 담당자에게 연결됨

【예산 등】

1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총액교부사업(교당 100만원) 집행 방법은?

○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협의회비 등 통합지원 관련 비용

13. 나이스(NEIS) 내 학생 관찰·기록 기능을 사용해야 하나요?

○ 나이스(NEIS) 내 학생 관찰·기록 기능은 개별 구성원이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고, 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절차를 위한 협의 등에 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에서 희망하는 시·도 및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2026.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뢰서제출방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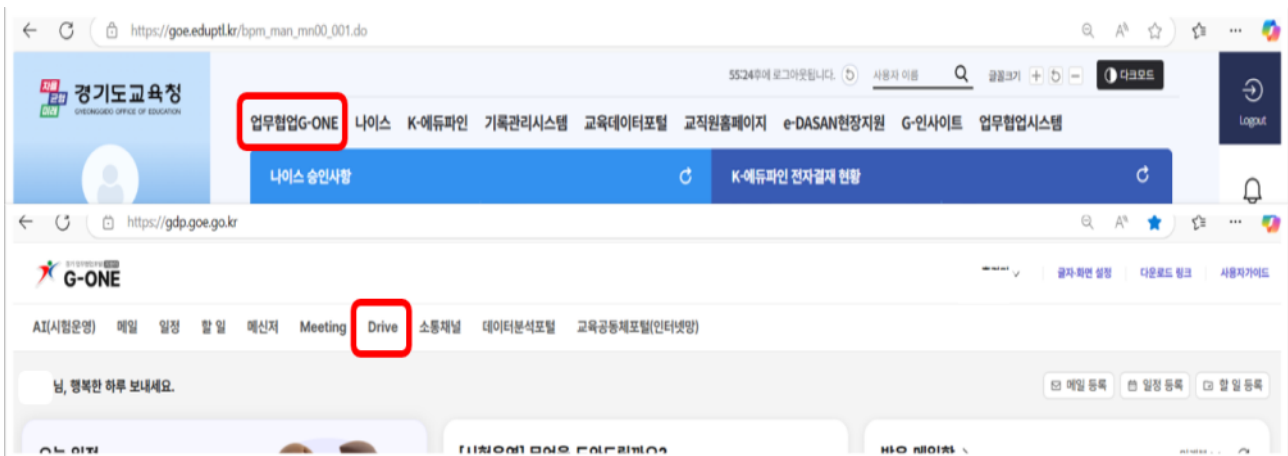
□ 의뢰서 제출 방법

- (업무협업G-ONE) 학교·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의뢰서 파일을 업무협업 G-ONE을 통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공유)

□ 세부 제출 절차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의뢰서 제출 방법]

① 업무포털 로그인 > 업무협업 G-ONE > Drive 클릭



② My files > 의뢰서 파일 업로드 >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보이는 아이콘 중, 공유 버튼 클릭

※ 업로드 시 파일 암호 설정 권고

My files > 지원청 제출자료

📁 파일 업로드

📁 새 폴더

📁 폴더 자동 정리

🔗 공유

⋮ 더 보기

📁 My files

📁 111

📁 2022

이름

최근 수정

유형

크기

📄 학생맞춤형통합지원(00초).hwp

2025-07-19 09:1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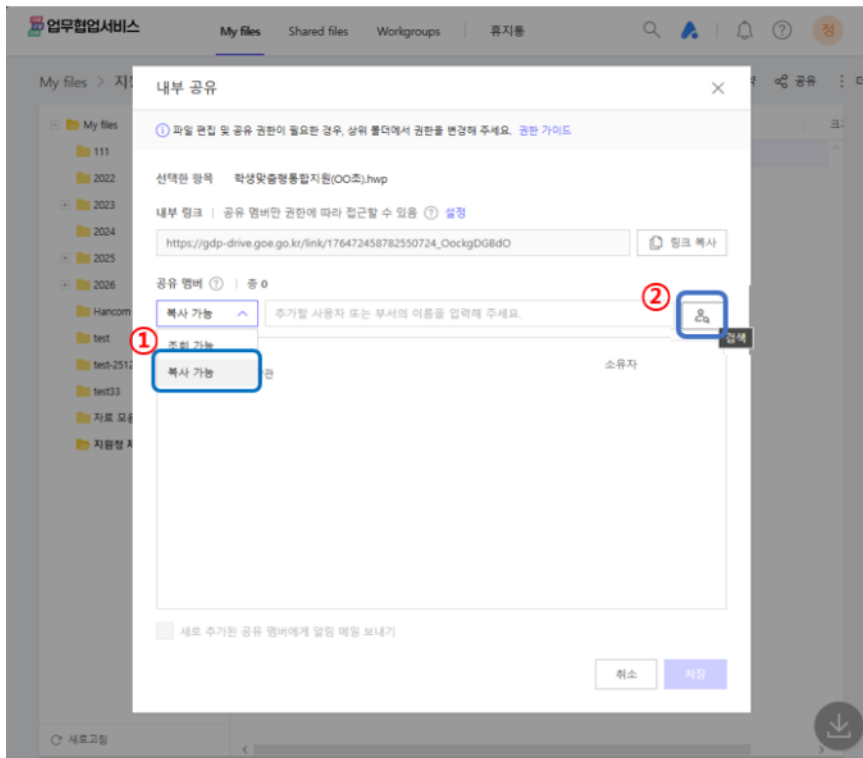
🔗

⋮

^

공유

③ 공유 권한의 ‘복사 가능’ 권한 선택 > 검색 클릭



④-1 사람검색 탭으로선택> 교육자원청담당자 **이메일주소 전체** 입력> 이메일선택

※ 반드시 이메일주소 전체를 입력하여야 검색됨

hyoju789@gdp.goe.go.kr(이효주), [luvual@gdp.goe.go.kr](mailto:luvuall@gdp.goe.go.kr)(김예은)

두명에게 공유

내보내기

사람 검색부서 검색

@gdp.goe.go.kr

이름@gdp.goe.go.kr

이메일@gdp.goe.go.kr

상단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사용자 중에서 검색한 키워드를 포함한 결과를 노출합니다.

추가총 0

선택한 항목 | 총 0 | 숨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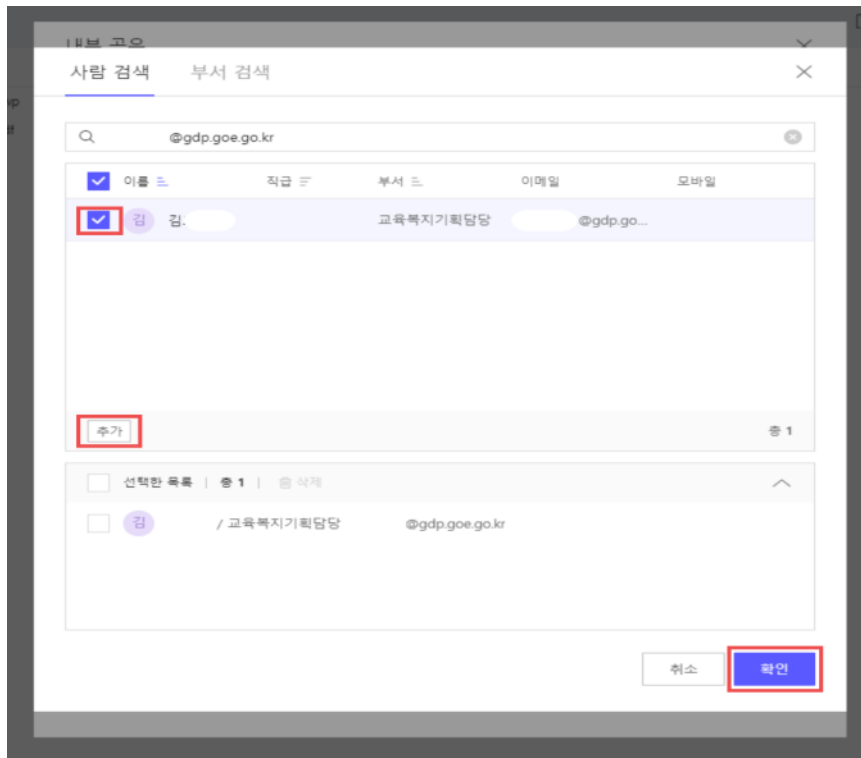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취소

확인

-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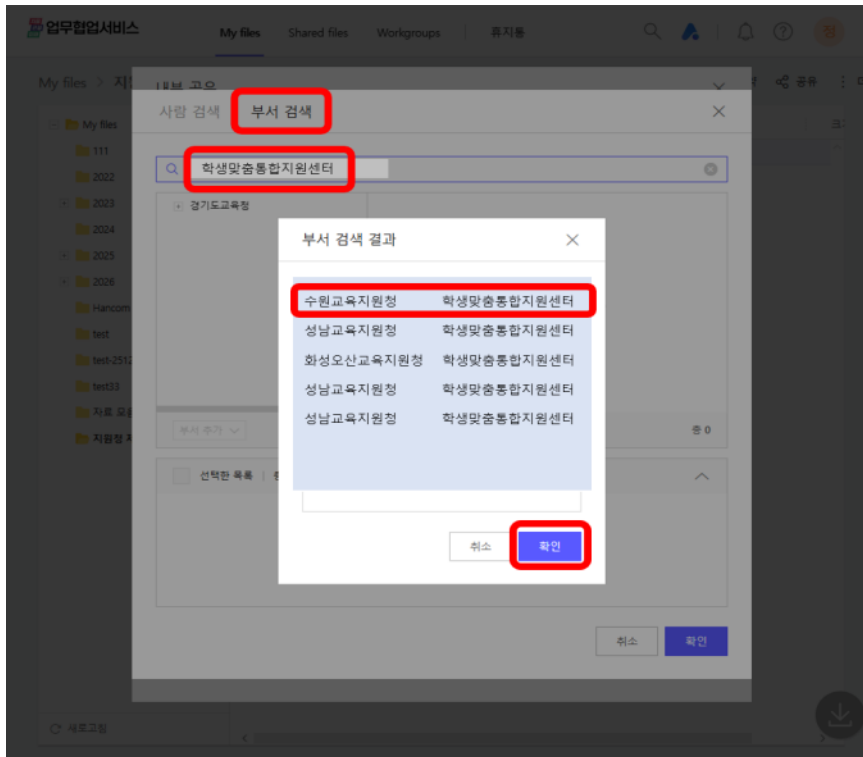
⑤-1 담당자 선택 > 추가 버튼 클릭 >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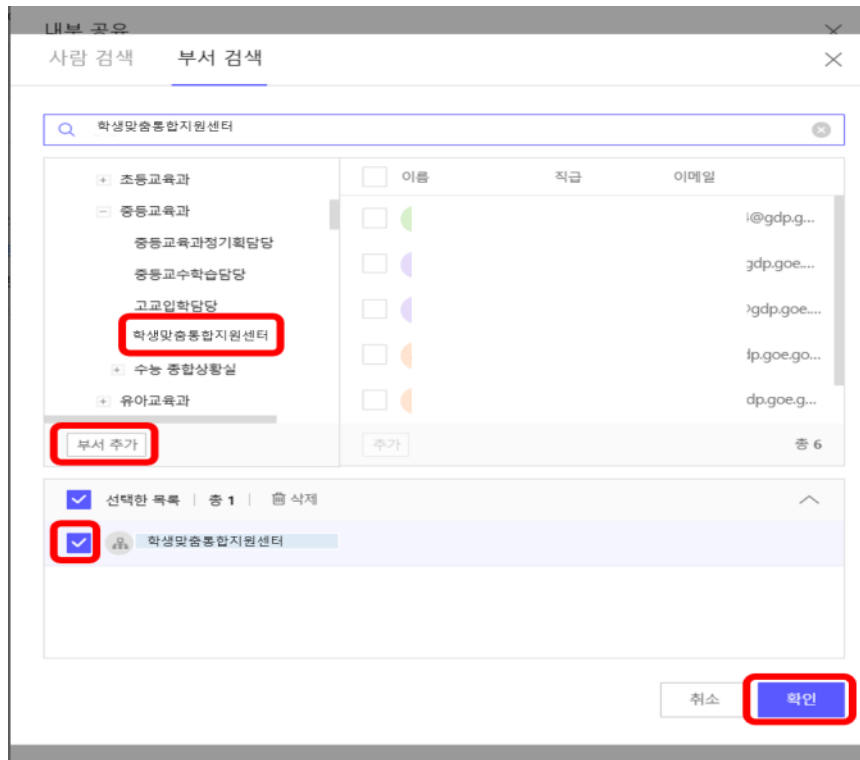
⑥-1 담당자 확인 > '새로 추가된 공유멤버에게 알림 메일 보내기' 체크 후 저장



④-2 **부서 검색** 탭으로 선택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검색 > 부서 정보 확인
 [부서 검색은 **2026. 4. 1.부터 가능**, 현재 시스템상 조직 구성중]



⑤-2 **부서추가** 버튼 클릭 > 확인



⑥-1 부서 확인 > ‘새로 추가된 공유 멤버에게 알림 메일 보내기’ 체크 후 저장

내부 공유

×

① 파일 편집 및 공유 권한이 필요한 경우, 상위 폴더에서 권한을 변경해 주세요. [권한 가이드](#)

선택한 항목

학교맞춤형통합지원(OO조).hwp

내부 링크

| 공유 멤버만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음

② [설정](#)

링크 복사

공유 멤버

③

|

총 1

복사 가능

▼

추가할 사용자 또는 부서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

소유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하위 부서 제외

복사 가능 ▼

☒ 새로 추가된 공유 멤버에게 알림 메일 보내기

취소

저장

※ 유의사항 : 의뢰서에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교육지원청 담당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제출(공유)되지 않도록 유의,
제출(공유)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또는 부서)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
선정결과 안내 받은 후 반드시 해당 파일 삭제